

발 간 등 록 번 호

33-9750040-000166-01

2018

국가별 법령집



일본국헌법 · 재판소법 · 재판사무처리규칙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01 | 일본국헌법 1

- | 국 문
- | 원 문

02 | 일본 재판소법 47

- | 국 문
- | 원 문

03 |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사무처리규칙 .. 149

- | 국 문
- | 원 문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 제1장 천황
- 제2장 전쟁 포기
-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장 국회
- 제5장 내각
- 제6장 사법
- 제7장 재정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개정
- 제10장 최고법규
- 제11장 보칙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민들과 평화적으로 협력하여 얻은 성과와 우리나라 전 영토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정부 행위로 전쟁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누린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昭和21年11月3日公布

昭和22年5月3日施行

- 第一章 天皇
- 第二章 戦争の放棄
- 第三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
- 第四章 国会
- 第五章 内閣
- 第六章 司法
- 第七章 財政
- 第八章 地方自治
- 第九章 改正
- 第十章 最高法規
- 第十一章 補則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다스리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바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킬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영원히 지상에서 없애려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다함께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만을 생각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一章 天皇

第一条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第二条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国会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継承する。

第三条

天皇の国事に関するすべての行為には、内閣の助言と承認を必要とし、内閣が、その責任を負ふ。

제4조

-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하며 국정(國政)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아니한다.
-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 섭정은 천황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 소집
3. 중의원 해산
4. 국회의원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 인증
6.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 수여

第四条

- ①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国事に関する行為のみを行ひ、国政に関する権能を有しない。
- ②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摂政を置くときは、摂政は、天皇の名で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条

- ① 天皇は、国会の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を任命する。
- ② 天皇は、内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第七条

天皇は、内閣の助言と承認により、国民のために、左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行ふ。

-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条約を公布すること。
- 二 国会を召集すること。
-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 四 国会議員の総選挙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 五 国务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並びに全権委任状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状を認証すること。
-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権を認証すること。
- 七 栄典を授与すること。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 접수
10. 의식 거행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혹은 하사할 때는 국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 포기

제9조

-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적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証すること。
- 九 外国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 十 儀式を行ふこと。

第八条

皇室に財産を譲り渡し、又は皇室が、財産を譲り受け、若しくは賜与することは、国会の議決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 戦争の放棄

第九条

- ①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 ②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第三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

第十条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十一条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与えられる。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국민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와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과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② 화족(華族)과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 수여는 지금 이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의 일대(一代)에만 효력이 있다.

제15조

-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 ②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 ③ 공무원 선거는 성년에 의한 보통선거가 보장된다.
-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대해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十二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第十三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十四条

- ①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 ②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 ③ 荣誉、勲章その他の栄典の授与は、いかなる特権も伴はない。栄典の授与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将来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第十五条

- ①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
- ② すべて公務員は、全体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 ③ 公務員の選挙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る。
- ④ すべて選挙における投票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 ①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종교적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③ 국가와 그 기관은 종교 교육과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第十六条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関し、平穩に請願する権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第十七条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為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又は公共団体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

何人も、いかなる奴隸的拘束も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第十九条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条

- ①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又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 ② 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典、儀式又は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
- ③ 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一条

- ①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 ② 검열은 금지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 ① 누구든지 공공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4조

-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맞추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二條

- ①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有する。
- ② 何人も、外国に移住し、又は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第二十三條

学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第二十四條

- ① 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配偶者の選択、財産権、相続、住居の選定、離婚並びに婚姻及び家族に関するその他の事項に関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條

- ①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
- ②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六條

- ①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て、ひと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 ②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아동을 혹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된다.

제29조

- 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教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第二十七条

- ① 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ふ。
- ②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労条件に関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 ③ 児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八条

勤労者の団結する権利及び団体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をする権利は、これを保障する。

第二十九条

- ①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 ②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 ③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条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第三十一条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続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司法官憲)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즉시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 없이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을 때 그 이유는 즉시 본인과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35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수색 장소 및 압수 물건이 명시된 영장 없이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절대 금지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第三十二条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権利を奪はれない。

第三十三条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権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発し、且つ理由と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状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

第三十四条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五条

- ①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搜索及び押収を受けることのない権利は、第三十三条の場合を除いては、正当な理由に基いて発せられ、且つ搜索する場所及び押収する物を明示する令状がなければ、侵されない。
- ② 搜索又は押収は、権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発する各別の令状により、これを行ふ。

第三十六条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残虐な刑罰は、絶対にこれを禁ずる。

第三十七条

- ①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告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을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며, 또한 자기를 위하여 공적 비용으로 강제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이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에 선임을 맡긴다.

제38조

-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부당하게 오래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 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 ② 刑事被告人は、すべての証人に対して審問する機会を十分に与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強制的な手続により証人を求める権利を有する。
- ③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が自らこれ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国でこれを附する。

第三十八条

- ①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強要されない。
- ② 強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当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③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証拠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三十九条

何人も、実行の時に適法であつた行為又は既に無罪とされた行為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第四十条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四章 国会

第四十一条

国会は、国権の最高機関であつて、国の唯一の立法機関である。

제42조

국회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된다.

제43조

- ① 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뽑힌 의원(議員)으로 조직한다.
-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원의 의원과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 수의 절반씩 새로 선출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방법, 그 밖의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은 될 수 없다.

第四十二条

国会は、衆議院及び参議院の両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第四十三条

- ① 両議院は、全国民を代表する選挙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る。
- ② 両議院の議員の定数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四十四条

両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挙人の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但し、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門地、教育、財産又は収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五条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その期間満了前に終了する。

第四十六条

参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数を改選する。

第四十七条

選挙区、投票の方法その他両議院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四十八条

何人も、同時に両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

제49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가 소속한 의원(議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로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쪽 의원(議院)이든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第四十九条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庫から相当額の歳費を受ける。

第五十条

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国会の会期中逮捕されず、会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会期中これ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

両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った演説、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第五十二条

国会の常会は、毎年一回これを召集する。

第五十三条

内閣は、国会の臨時会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かの議院の総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内閣は、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四条

①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内に、衆議院議員の総選挙を行ひ、その選挙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国会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参議院は、同時に閉会となる。但し、内閣は、国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参議院の緊急集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③ 전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상실시키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제56조

- ① 양원은 각각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議事)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② 양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 ② 양원은 각각 회의 기록을 보존하며 비밀회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외에는 공표하고 일반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 ① 양원은 각각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 ② 양원은 각각 회의와 그 밖의 절차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③ 前項但書の緊急集会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であつて、次の国会開会の後十日以内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その効力を失ふ。

第五十五条

両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関する争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第五十六条

- ① 両議院は、各々その総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② 両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議員の過半数でこれを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が決するところによる。

第五十七条

- ① 両議院の会議は、公開とする。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で議決したときは、秘密会を開くことができる。
- ② 両議院は、各々その会議の記録を保存し、秘密会の記録の中で特に秘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は、これを会議録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

- ① 両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 ② 両議院は、各々その会議その他の手続及び内部の規律に関する規則を定め、又、院内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제59조

-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에서 가결되었을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르게 의결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된 때에 법률로서 성립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원 협의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 ④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 ①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 ②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르게 예산을 의결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참의원이 이송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은 전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五十九条

- ①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両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 ② 衆議院で可決し、参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 ③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両議院の協議会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 ④ 参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国会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内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参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第六十条

- ① 予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予算について、参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参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予算を受け取つた後、国会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内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国会の議決とする。

第六十一条

条約の締結に必要な国会の承認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十二条

両議院は、各々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関して、証人の出頭及び証言並びに記録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63조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

-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된다.
- ②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어떤 다른 안전보다도 먼저 한다.

第六十三条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务大臣は、両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発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又、答弁又は説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四条

- ① 国会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両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弾劾裁判所を設ける。
- ② 弾劾に関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五章 内閣

第六十五条

行政権は、内閣に属する。

第六十六条

- ① 内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内閣総理大臣及びその他の国务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 ②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务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内閣は、行政権の行使について、国会に対し連帯して責任を負ふ。

第六十七条

- ① 内閣総理大臣は、国会議員の中から国会の議決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을 의결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을 의결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을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제68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소집이 있는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

전 2조의 경우 내각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와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衆議院と参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国会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内に、参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国会の議決とする。

第六十八条

- ① 内閣総理大臣は、国务大臣を任命する。但し、その過半数は、国会議員の中から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内閣総理大臣は、任意に国务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九条

内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内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条

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総選挙の後に初めて国会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内閣は、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一条

前二条の場合には、内閣は、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ふ。

第七十二条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て議案を国会に提出し、一般国务及び外交関係について国会に報告し、並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사무를 한다.

1. 성실한 법률 집행과 국무 총괄
2. 외교관계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거칠 것을 요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리(官吏)에 관한 사무 관장
5. 예산 작성과 국회 제출
6. 이 헌법과 법률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정령(政令)제정. 다만, 정령에는 특별히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칙을 둘 수 없다.
7.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74조

법률과 정령에는 모든 주무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連署)하여야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제76조

-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第七十三条

内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の事務を行ふ。

- 一 法律を誠実に執行し、国務を総理すること。
- 二 外交関係を処理すること。
- 三 条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国会の承認を経ることを必要とする。
-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従ひ、官吏に関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 五 予算を作成して国会に提出すること。
-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実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権を決定すること。

第七十四条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の国務大臣が署名し、内閣総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権利は、害されない。



第六章 司法

第七十六条

- ① すべて司法権は、最高裁判所及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に属する。

-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 ③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 내부규율 및 사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재판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제79조

-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인원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임명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회부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하여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회부하며 그 이후도 이와 같다.
- ③ 전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 파면을 결정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②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行政機関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ができない。
- ③ 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従ひ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第七十七条

- ① 最高裁判所は、訴訟に関する手続、弁護士、裁判所の内部規律及び司法事務処理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権限を有する。
- ② 検察官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規則に従は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最高裁判所は、下級裁判所に関する規則を定める権限を、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八条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処分は、行政機関がこれを行ふことはできない。

第七十九条

- ① 最高裁判所は、その長たる裁判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数のその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そ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 ②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は、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総選挙の際国民の審査に付し、その後十年を経過し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総選挙の際更に審査に付し、その後も同様とする。
- ③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者の多数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するときは、その裁判官は、罷免される。

-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퇴직한다.
-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 명부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퇴직한다.
-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응액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중심재판소이다.

제82조

- ① 재판의 대심(對審)과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한다.
-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대심은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 ④ 審査に関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 ⑤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法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 ⑥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条

- ①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その裁判官は、任期を十年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但し、法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時には退官する。
- 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一条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第八十二条

- ① 裁判の対審及び判決は、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 ②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対審は、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政治犯罪、出版に関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国民の権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対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요한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과 그 밖의 공적 재산은 종교적 조직과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혹은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



第七章 財政

第八十三条

国の財政を処理する権限は、国会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四条

あらた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の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条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八十五条

国費を支出し、又は国が債務を負担するには、国会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第八十六条

内閣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成し、国会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七条

- ① 予見し難い予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国会の議決に基いて予備費を設け、内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すべて予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内閣は、事後に国会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八条

すべて皇室財産は、国に属す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予算に計上して国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九条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上の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

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 사업에 지출되거나 그 이용에 제
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 ① 국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
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와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
래 취지를 바탕으로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
관(議事機關)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
한다.

제94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
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善、教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第九十条

- ① 国の収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毎年会計検査院がこれを検査し、内閣は、次の年度に、その検査報告とともに、これを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会計検査院の組織及び権限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九十一条

内閣は、国会及び国民に対し、定期に、少なくとも毎年一回、国の財政状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二条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九十三条

- ① 地方公共団体に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議事機関として議会を設置する。
- ② 地方公共団体の長、その議会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吏員は、その地方公共団体の住民が、直接これを選挙する。

第九十四条

地方公共団体は、その財産を管理し、事務を処理し、及び行政を執行する権能を有し、法律の範囲内で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제95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 ① 이 헌법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에서 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② 헌법 개정이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에는, 천황이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랫동안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이 없다.
-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하게

第九十五条

一の地方公共団体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団体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国会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九章 改正

第九十六条

①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②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ものとし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第十章 最高法規

第九十七条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多の試練に堪へ、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第九十八条

① この憲法は、国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条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国務に関するその他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効力を有しない。

② 日本国が締結した条約及び確立された国際法規は、こ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99조

천황이나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 ① 이 헌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 소집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절차는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을 시행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인원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을 시행할 때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된 사람은, 법률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それを誠実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九十九条

天皇又は摂政及び国務大臣、国会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第十一章 補則

第百条

- ① この憲法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箇月を経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 ② 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法律の制定、参議院議員の選挙及び国会召集の手續並び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手續は、前項の期日よりも前に、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第百一条

この憲法施行の際、参議院がま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その成立するまでの間、衆議院は、国会としての権限を行ふ。

第百二条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参議院議員のうち、その半数の者の任期は、これを三年とする。そ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定める。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 1947년 법률 제59호
- 시행일: 2017년 11월 1일
- 최종개정: 2017년 6월 21일 공포(2017년 법률 제67호) 개정

제1편 총칙

제2편 최고재판소

제3편 하급재판소

제1장 고등재판소

제2장 지방재판소

제3장 가정재판소

제4장 간이재판소

제4편 재판소 직원과 사법수습생

제1장 재판관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제3장 사법수습생

제5편 재판사무 취급

제1장 법정

제2장 재판소 용어

제3장 재판의 평의

제4장 재판소 공조

제6편 사법행정

제7편 재판소 경비

- 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九号
- 平成二十九年十一月一日施行
- 最終更新: 平成二十九年六月二十一日公布(平成二十九年法律第六十七号)改正

第一編 総則

第二編 最高裁判所

第三編 下級裁判所

第一章 高等裁判所

第二章 地方裁判所

第三章 家庭裁判所

第四章 簡易裁判所

第四編 裁判所の職員及び司法修習生

第一章 裁判官

第二章 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

第三章 司法修習生

第五編 裁判事務の取扱

第一章 法廷

第二章 裁判所の用語

第三章 裁判の評議

第四章 裁判所の共助

第六編 司法行政

第七編 裁判所の経費



제1편 총칙

(이 법률의 취지)

제1조

일본국헌법에서 정하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급재판소)

제2조

- ① 하급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및 간이재판소로 한다.
- ② 하급재판소의 설립, 폐지와 관할구역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재판소 권한)

제3조

- ① 재판소는 일본국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재판하고, 그 밖의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전심(前審)으로서 심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률의 규정은 형사(刑事)에 관하여 별도로 법률에서 배심제도를 두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상급심 재판의 구속력)

제4조

상급심 재판소 재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 재판소를 구속한다.



第一編 総則

(この法律の趣旨)

第一条

日本国憲法に定める最高裁判所及び下級裁判所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下級裁判所)

第二条

- ① 下級裁判所は、高等裁判所、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及び簡易裁判所とする。
- ② 下級裁判所の設立、廃止及び管轄区域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裁判所の権限)

第三条

- ① 裁判所は、日本国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一切の法律上の争訟を裁判し、その他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を有する。
- ② 前項の規定は、行政機関が前審として審判することを妨げない。
- ③ この法律の規定は、刑事について、別に法律で陪審の制度を設けることを妨げない。

(上級審の裁判の拘束力)

第四条

上級審の裁判所の裁判における判断は、その事件について下級審の裁判所を拘束する。

(재판관)

제5조

- 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장관으로 하고 그 밖의 재판관을 최고재판소판사로 한다.
-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고등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고등재판소장관으로 하고 그 밖의 재판관을 판사, 판사보 및 간이재판소판사로 한다.
- ③ 최고재판소판사 인원은 14인으로 하고 하급재판소 재판관 인원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2편 최고재판소

(소재지)

제6조

최고재판소는 동경도(東京都)에 둔다.

(재판권)

제7조

최고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상고
2. 소송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항고

(그 밖의 권한)

제8조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법정·소법정)

제9조

- ① 최고재판소는 대법정 또는 소법정에서 심리와 재판을 한다.

(裁判官)

第五条

- ①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その長たる裁判官を最高裁判所長官とし、その他の裁判官を最高裁判所判事とする。
- 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高等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高等裁判所長官とし、その他の裁判官を判事、判事補及び簡易裁判所判事とする。
- ③ 最高裁判所判事の員数は、十四人とし、下級裁判所の裁判官の員数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二編 最高裁判所

(所在地)

第六条

最高裁判所は、これを東京都に置く。

(裁判権)

第七条

最高裁判所は、左の事項について裁判権を有する。

- 一 上告
- 二 訴訟法において特に定める抗告

(その他の権限)

第八条

最高裁判所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他の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を有する。

(大法廷・小法廷)

第九条

- ① 最高裁判所は、大法廷又は小法廷で審理及び裁判をする。

- ② 대법정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법정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인원의 재판관 합의체로 한다. 다만, 소법정 재판관 인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각 합의체 재판관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 ④ 각 합의체는 최고재판소가 정한 인원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정과 소법정의 심판)

제10조

대법정과 소법정 중 어디에서 사건을 다룰 것인지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다.

1. 당사자 주장에 근거하여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이전에 대법정에서 해당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한 재판과 의견이 같은 때를 제외)
2. 전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3. 헌법과 그 밖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이전에 최고재판소가 한 재판에 반할 때

(재판관 의견 표시)

제11조

재판서에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법행정사무)

제12조

- ① 최고재판소는 재판관회의의 협의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집행하며, 최고재판소장관이 이를 총괄한다.

- ② 大法廷は、全員の裁判官の、小法廷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員数の裁判官の合議体とする。但し、小法廷の裁判官の員数は、三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各合議体の裁判官のうち一人を裁判長とする。
- ④ 各合議体で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員数の裁判官が出席すれば、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大法廷及び小法廷の審判)

第十条

事件を大法廷又は小法廷のいずれで取り扱うかについて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但し、左の場合においては、小法廷では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事者の主張に基いて、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判断するとき。（意見が前に大法廷でした、そ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との裁判と同じであるときを除く。）
- 二 前号の場合を除いて、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
- 三 憲法その他の法令の解釈適用について、意見が前に最高裁判所のした裁判に反するとき。

(裁判官の意見の表示)

第十一条

裁判書には、各裁判官の意見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司法行政事務)

第十二条

- ① 最高裁判所が司法行政事務を行うのは、裁判官会議の議によるものとし、最高裁判所長官が、これを総括する。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조직되며 최고재판소장관이 의장이 된다.

(사무총국)

제13조

최고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에 사무총국을 둔다.

(사법연수소)

제14조

재판관의 연구 및 수양과 사법수습생 수습에 관한 사무를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에 사법연수소를 둔다.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제14조의2

재판소서기관, 가정재판소조사관, 그 밖에 재판관이 아닌 재판소 직원의 연구와 수양에 관한 사무를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에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를 둔다.

(최고재판소도서관)

제14조의3

최고재판소에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서 최고재판소도서관을 둔다.

② 裁判官会議は、全員の裁判官でこれを組織し、最高裁判所長官が、その議長となる。

(事務総局)

第十三条

最高裁判所の庶務を掌らせるため、最高裁判所に事務総局を置く。

(司法研修所)

第十四条

裁判官の研究及び修養並びに司法修習生の修習に関する事務を取り扱わせるため、最高裁判所に司法研修所を置く。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第十四条の二

裁判所書記官、家庭裁判所調査官その他の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の研究及び修養に関する事務を取り扱わせるため、最高裁判所に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を置く。

(最高裁判所図書館)

第十四条の三

最高裁判所に国立国会図書館の支部図書館として、最高裁判所図書館を置く。



제3편 하급재판소

제1장 고등재판소

(구성)

제15조

각 고등재판소는 고등재판소장관 및 상응하는 인원의 판사로 구성한다.

(재판권)

제16조

고등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지방재판소의 제1심 판결, 가정재판소 판결 및 간이재판소의 형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
2. 제7조 제2호의 항고를 제외하고,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결정 및 명령과 간이재판소의 형사에 관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3. 형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지방재판소 제2심 판결과 간이재판소 결정에 대한 상고
4. 형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의 죄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그 밖의 권한)

제17조

고등재판소는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第三編 下級裁判所

第一章 高等裁判所

(構成)

第十五条

各高等裁判所は、高等裁判所長官及び相応な員数の判事でこれを構成する。

(裁判権)

第十六条

高等裁判所は、左の事項について裁判権を有する。

- 一 地方裁判所の第一審判決、家庭裁判所の判決及び簡易裁判所の刑事に関する判決に対する控訴
- 二 第七条第二号の抗告を除いて、地方裁判所及び家庭裁判所の決定及び命令並びに簡易裁判所の刑事に関する決定及び命令に対する抗告
- 三 刑事に関するものを除いて、地方裁判所の第二審判決及び簡易裁判所の判決に対する上告
- 四 刑法第七十七条乃至第七十九条の罪に係る訴訟の第一審

(その他の権限)

第十七条

高等裁判所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他の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を有する。

(합의제)

제18조

- ① 고등재판소는 재판관 합의체로 해당 사건을 다룬다. 다만,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 심리와 재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전항의 합의체 재판관 인원은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4호 소송의 경우 재판관 인원은 5인으로 한다.

(재판관의 직무 대행)

제19조

- ① 고등재판소는 재판사무 취급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의 지방재판소나 가정재판소 판사에게 그 고등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고등재판소가 긴급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최고재판소는 다른 고등재판소 또는 그 관할구역의 지방재판소나 가정재판소 판사에게 해당 고등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법행정사무)

제20조

- ① 각 고등재판소는 재판관회의의 협의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하고 각 고등재판소장관이 이를 총괄한다.
- ②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회의는 그 재판관 전원으로 조직되고 각 고등재판소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合議制)

第十八条

- ① 高等裁判所は、裁判官の合議体でその事件を取り扱う。但し、法廷ですべき審理及び裁判を除いて、その他の事項につき他の法律に特別の定があるときは、その定に従う。
- ② 前項の合議体の裁判官の員数は、三人とし、そのうち一人を裁判長とする。但し、第十六条第四号の訴訟については、裁判官の員数は、五人とする。

(裁判官の職務の代行)

第十九条

- ① 高等裁判所は、裁判事務の取扱上さし迫つた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管轄区域内の地方裁判所又は家庭裁判所の判事にその高等裁判所の判事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② 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高等裁判所のさし迫つた必要をみたすことができない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最高裁判所は、他の高等裁判所又はその管轄区域内の地方裁判所若しくは家庭裁判所の判事に当該高等裁判所の判事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司法行政事務)

第二十条

- ① 各高等裁判所が司法行政事務を行うのは、裁判官会議の議によるものとし、各高等裁判所長官が、これを総括する。
- ② 各高等裁判所の裁判官会議は、その全員の裁判官でこれを組織し、各高等裁判所長官が、その議長となる。

(사무국)

제21조

각 고등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고등 재판소에 사무국을 둔다.

(지부)

제22조

- ① 최고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에 고등재판소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최고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부에 근무할 재판관을 정한다.

제2장 지방재판소

(구성)

제23조

각 지방재판소는 적절한 인원의 판사와 판사보로 구성한다.

(재판권)

제24조

지방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청구 외의 청구에 관한 소송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인사소송을 제외)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청구와 관계된 소송 중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제1심
2. 제16조 제4호의 죄 및 벌금 이하의 형 외의 죄와 관계된 소송의 제1심

(事務局)

第二十一条

各高等裁判所の庶務を掌らせるため、各高等裁判所に事務局を置く。

(支部)

第二十二条

- ① 最高裁判所は、高等裁判所の事務の一部を取り扱わせるため、その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高等裁判所の支部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 ② 最高裁判所は、高等裁判所の支部に勤務する裁判官を定める。

第二章 地方裁判所

(構成)

第二十三条

各地方裁判所は、相応な員数の判事及び判事補でこれを構成する。

(裁判権)

第二十四条

地方裁判所は、次の事項について裁判権を有する。

- 一 第三十三条第一項第一号の請求以外の請求に係る訴訟（第三十一条の三第一項第二号の人事訴訟を除く。）及び第三十三条第一項第一号の請求に係る訴訟のうち不動産に関する訴訟の第一審
- 二 第十六条第四号の罪及び罰金以下の刑に当たる罪以外の罪に係る訴訟の第一審

3. 제16조 제1호의 항소를 제외한 간이재판소 판결에 대한 항소
4. 제7조 제2호 및 제16조 제2호의 항고를 제외한 간이재판소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항고

(그 밖의 권한)

제25조

지방법판소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 및 다른 법률에서 재판소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사항 중에서 지방재판소가 아닌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단독제·합의제)

제26조

- ① 지방재판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다룬다.
- ② 다음의 사건은 재판관 합의체로 다룬다. 다만,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 심리와 재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합의체에서 합의체로 심리와 재판을 한다고 결정한 사건
 2. 사형과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236조,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죄와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1조의3의 죄와 절도및강도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법률(1930년 법률 제9호)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제외)에 관한 사건

三 第十六条第一号の控訴を除いて、簡易裁判所の判決に対する控訴

四 第七条第二号及び第十六条第二号の抗告を除いて、簡易裁判所の決定及び命令に対する抗告

(その他の権限)

第二十五条

地方裁判所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他の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及び他の法律において裁判所の権限に属するものと定められた事項の中で地方裁判所以外の裁判所の権限に属させていない事項についての権限を有する。

(一人制・合議制)

第二十六条

① 地方裁判所は、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いて、一人の裁判官でその事件を取り扱う。

② 次に掲げる事件は、裁判官の合議体でこれを取り扱う。ただし、法廷ですべき審理及び裁判を除いて、その他の事項につき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に従う。

- 一 合議体で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合議体とした事件
- 二 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短期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罪（刑法第二百三十六条、第二百三十八条又は第二百三十九条の罪及びその未遂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大正十五年法律第六十号）第一条ノ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一条ノ三第一項の罪並びに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昭和五年法律第九号）第二条又は第三条の罪を除く。）に係る事件

3. 간이재판소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간이재판소 결정과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합의체로 심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건
- ③ 전항의 합의체 재판관 인원은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판사보의 직권 제한)

제27조

- ① 판사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으로 재판할 수 없다.
- ② 판사보는 동시에 2인 이상 합의체에 참가하거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재판관의 직무 대행)

제28조

- ①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사무 취급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가 그 관할구역의 다른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또는 그 고등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해당 지방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재판소의 긴급한 필요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최고재판소는 그 지방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 이외의 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의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또는 그 고등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해당 지방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三 簡易裁判所の判決に対する控訴事件並びに簡易裁判所の決定及び命令に対する抗告事件

四 その他他の法律において合議体で審理及び裁判をすべきものと定められた事件

③ 前項の合議体の裁判官の員数は、三人とし、そのうち一人を裁判長とする。

(判事補の職権の制限)

第二十七条

① 判事補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一人で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判事補は、同時に二人以上合議体に加わり、又は裁判長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裁判官の職務の代行)

第二十八条

① 地方裁判所において裁判事務の取扱上さし迫つた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は、その管轄区域内の他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その高等裁判所の裁判官に当該地方裁判所の裁判官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② 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地方裁判所のさし迫つた必要をみたすことができない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最高裁判所は、その地方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以外の高等裁判所の管轄区域内の地方裁判所、家庭裁判所又はその高等裁判所の裁判官に当該地方裁判所の裁判官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사법행정사무)

제29조

- ① 최고재판소는 각 지방재판소 판사 중 1인에게 각 지방재판소장을 명한다.
- ② 각 지방재판소 사법행정사무는 재판관회의의 협의에 따라 하고 각 지방재판소장이 총괄한다.
- ③ 각 지방재판소 재판관회의는 그 판사 전원으로 조직하고 각 지방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사무국)

제30조

각 지방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재판소에 사무국을 둔다.

(지부·출장소)

제31조

- ① 최고재판소는 지방재판소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에 지방재판소의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② 최고재판소는 지방재판소 지부에 근무할 재판관을 정한다.

제3장 가정재판소

(구성)

제31조의2

각 가정재판소는 적절한 인원의 판사와 판사보로 구성한다.

(司法行政事務)

第二十九条

- ① 最高裁判所は、各地方裁判所の判事のうち一人に各地方裁判所長を命ずる。
- ② 各地方裁判所が司法行政事務を行うのは、裁判官会議の議によるものとし、各地方裁判所長が、これを総括する。
- ③ 各地方裁判所の裁判官会議は、その全員の判事でこれを組織し、各地方裁判所長が、その議長となる。

(事務局)

第三十条

各地方裁判所の庶務を掌らせるため、各地方裁判所に事務局を置く。

(支部・出張所)

第三十一条

- ① 最高裁判所は、地方裁判所の事務の一部を取り扱わせるため、その地方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地方裁判所の支部又は出張所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 ② 最高裁判所は、地方裁判所の支部に勤務する裁判官を定める。

第三章 家庭裁判所

(構成)

第三十一条の二

各家庭裁判所は、相応な員数の判事及び判事補でこれを構成する。

(재판권 그 밖의 권한)

제31조의3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가사사건절차법(2011년 법률 제52호)이 규정하는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판과 조정
 2. 인사소송법(2003년 법률 제109호)이 규정하는 인사소송의 제1심 재판
 3.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이 규정하는 소년 보호사건의 심판
- ② 가정재판소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독제·합의제)

제31조의4

- ① 가정재판소는 심판이나 재판을 할 때 다음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의 재판관이 그 사건을 다룬다.
- ②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은 재판관의 합의체로 다룬다. 다만, 심판을 종결시키는 결정과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 심리와 재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합의체에서 합의체로 심판 또는 심리와 재판을 한다고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에서 합의체로 심판 또는 심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건
- ③ 전항의 합의체 재판관 인원은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지방재판소 규정의 준용)

제31조의5

제27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은 가정재판소에 준용한다.

(裁判権その他の権限)

第三十一条の三

家庭裁判所は、次の権限を有する。

- 一 家事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二号）で定める家庭に関する事件の審判及び調停
 - 二 人事訴訟法（平成十五年法律第九号）で定める人事訴訟の第一審の裁判
 - 三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六十八号）で定める少年の保護事件の審判
- ② 家庭裁判所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他の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を有する。

(一人制・合議制)

第三十一条の四

- ① 家庭裁判所は、審判又は裁判を行う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いて、一人の裁判官でその事件を取り扱う。
- ② 次に掲げる事件は、裁判官の合議体でこれを取り扱う。ただし、審判を終局させる決定並びに法廷ですべき審理及び裁判を除いて、その他の事項につき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に従う。
 - 一 合議体で審判又は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合議体とした事件
 - 二 他の法律において合議体で審判又は審理及び裁判をすべきものと定められた事件
- ③ 前項の合議体の裁判官の員数は、三人とし、そのうち一人を裁判長とする。

(地方裁判所の規定の準用)

第三十一条の五

第二十七条乃至第三十一条の規定は、家庭裁判所にこれを準用する。

제4장 간이재판소

(재판관)

제32조

각 간이재판소에 적절한 인원의 간이재판소판사를 둔다.

(재판권)

제33조

① 간이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심 재판권을 가진다.

1. 소송 목적의 가액이 140만 엔을 넘지 않는 청구(행정 사건소송에 관한 청구를 제외)
2.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 또는 형법 제186조, 제252조 혹은 제256조의 죄에 관한 소송

② 간이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형법 제130조의 죄나 그 미수죄, 동법 제186조의 죄, 동법 제235조의 죄나 그 미수죄, 동법 제252조, 제254조 혹은 제256조의 죄, 고물영업법(1950년 법률 제108호) 제31조부터 33조까지의 죄 또는 전당포영업법(1950년 법률 제158호)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죄에 관한 사건 또는 이러한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러한 죄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간이재판소는 전항의 제한을 넘는 형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지방재판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의 권한)

제34조

간이재판소는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외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第四章 簡易裁判所

(裁判官)

第三十二条

各簡易裁判所に相応な員数の簡易裁判所判事を置く。

(裁判権)

第三十三条

- ① 簡易裁判所は、次の事項について第一審の裁判権を有する。
 - 一 訴訟の目的の価額が百四十万円を超えない請求（行政事件訴訟に係る請求を除く。）
 - 二 罰金以下の刑に当たる罪、選択刑として罰金が定められている罪又は刑法第百八十六条、第二百五十二条若しくは第二百五十六条の罪に係る訴訟
- ② 簡易裁判所は、禁錮以上の刑を科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刑法第百三十条の罪若しくはその未遂罪、同法第百八十六条の罪、同法第二百三十五条の罪若しくはその未遂罪、同法第二百五十二条、第二百五十四条若しくは第二百五十六条の罪、古物営業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号）第三十一条から第三十三条までの罪若しくは質屋営業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五十八号）第三十条から第三十二条までの罪に係る事件又はこれらの罪と他の罪とにつき刑法第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罪の刑をもつて処断すべき事件においては、三年以下の懲役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簡易裁判所は、前項の制限を超える刑を科する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件を地方裁判所に移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他の権限)

第三十四条

簡易裁判所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他の法律において特に定める権限を有する。

(단독제)

제35조

간이재판소는 1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다룬다.

(재판관의 직무 대행)

제36조

① 간이재판소에서 재판사무 취급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간이재판소 재판관 또는 그 지방재판소 판사에게 해당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간이재판소가 긴급한 필요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간이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는 동항에서 정하는 재판관 이외의 그 관할구역 내의 간이재판소 재판관 또는 지방재판소 판사에게 해당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법행정사무)

제37조

각 간이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는 간이재판소 재판관이 1인일 때에는 그 재판관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재판소가 지명하는 1인의 재판관이 맡아서 처리한다.

(사무 이전)

제38조

간이재판소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무를 다룰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관할구역의 다른 간이재판소에 해당 간이재판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루도록 할 수 있다.

(一人制)

第三十五条

簡易裁判所は、一人の裁判官でその事件を取り扱う。

(裁判官の職務の代行)

第三十六条

① 簡易裁判所において裁判事務の取扱上さし迫つた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は、その管轄区域内の他の簡易裁判所の裁判官又はその地方裁判所の判事に当該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② 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簡易裁判所のさし迫つた必要をみたすことができない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その簡易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は、同項に定める裁判官以外のその管轄区域内の簡易裁判所の裁判官又は地方裁判所の判事に当該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재판소법

(司法行政事務)

第三十七条

各簡易裁判所の司法行政事務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一人のときは、その裁判官が、二人以上のときは、最高裁判所の指名する一人の裁判官がこれを掌理する。

(事務の移転)

第三十八条

簡易裁判所において特別の事情によりその事務を取り扱う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は、その管轄区域内の他の簡易裁判所に当該簡易裁判所の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扱わせることができる。



제4편 재판소 직원과 사법수습생

제1장 재판관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면)

제39조

- ① 최고재판소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근거하여 천황이 임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판사는 내각이 임명한다.
- ③ 최고재판소판사의 임면은 천황이 인증한다.
- ④ 최고재판소장관과 최고재판소판사의 임명은 국민심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심사에 부쳐진다.

(하급재판소 재판관 임면)

제40조

- ① 고등재판소장관, 판사, 판사보 및 간이재판소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지명하는 사람의 명부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한다.
- ② 고등재판소장관 임면은 천황이 인증한다.
- ③ 제1항의 재판관은 그 관직에 임명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자격)

제41조

- 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식견이 높고 법률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중 적어도 10인은 10년 이상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직(職)의 하나 이상에 있던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직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있는 경우는 햇수를 통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第四編 裁判所の職員及び司法修習生

第一章 裁判官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免)

第三十九条

- ① 最高裁判所長官は、内閣の指名に基いて、天皇がこれを任命する。
- ② 最高裁判所判事は、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 ③ 最高裁判所判事の任免は、天皇がこれを認証する。
- ④ 最高裁判所長官及び最高裁判所判事の任命は、国民の審査に関する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民の審査に付される。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の任免)

第四十条

- ① 高等裁判所長官、判事、判事補及び簡易裁判所判事は、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 ② 高等裁判所長官の任免は、天皇がこれを認証する。
- ③ 第一項の裁判官は、その官に任命された日から十年を経過したときは、その任期を終えるもの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資格)

第四十一条

- ①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識見の高い、法律の素養のある年齢四十年以上の者の中からこれを任命し、そのうち少くとも十人は、十年以上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に在つた者又は左の各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以上に在つてその年数を通算して二十年以上にな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1. 고등재판소장관
2. 판사
3. 간이재판소판사
4. 검찰관
5. 변호사
6.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대학 법률학 교수 또는 준(准) 교수

② 5년 이상 전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직의 하나 또는 둘에 있는 사람이나 10년 이상 동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직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있는 사람이 판사보, 재판소조사관, 최고재판소사무총장, 재판소사무관, 사법연수소교관,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 법무성 사무차관, 법무사무관 또는 법무교관의 직에 있는 경우에는 동항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그 재직을 동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직의 재직으로 본다.

③ 전 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전항에 규정된 직에 있는 햇수는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친 후의 햇수에 한하여 이를 해당 직에 있는 햇수로 한다.

④ 3년 이상 제1항 제6호의 대학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 직에 있는 사람이 간이재판소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 직에 취임한 경우, 그 간이재판소판사, 검찰관(부검사를 제외) 또는 변호사 직에 있는 햇수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등재판소장관과 판사의 임명자격)

제42조

① 고등재판소장관과 판사는 다음 각 호의 직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있었던 햇수를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一 高等裁判所長官
- 二 判事
- 三 簡易裁判所判事
- 四 検察官
- 五 弁護士
- 六 別に法律で定める大学の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

② 五年以上前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に在つた者又は十年以上同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以上に在つた者が判事補、裁判所調査官、最高裁判所事務総長、裁判所事務官、司法研修所教官、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法務省の事務次官、法務事務官又は法務教官の職に在つたときは、その在職は、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を同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職の在職とみなす。

③ 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第三号乃至第五号及び前項に掲げる職に在つた年数は、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た後の年数に限り、これを当該職に在つた年数とする。

④ 三年以上第一項第六号の大学の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の職に在つた者が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又は弁護士の職に就い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副検事を除く。）又は弁護士の職に在つた年数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高等裁判所長官及び判事の任命資格)

第四十二条

① 高等裁判所長官及び判事は、次の各号に掲げる職の一又は二以上に在つてその年数を通算して十年以上になる者の中からこれを任命する。

1. 판사보
 2. 간이재판소판사
 3. 검찰관
 4. 변호사
 5. 재판소조사관, 사법연수소교수 또는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
 6. 전조 제1항 제6호의 대학의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
- ②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3년 이상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직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있는 사람이 재판소사무관, 법무사무관 또는 법무교관의 직에 있을 때에 그 재직은 동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의 재직으로 본다.
- ③ 전 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에 있는 햇수는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친 후의 햇수에 한하여 이를 해당 직에 있는 햇수로 한다.
- ④ 전조 제1항 제6호의 대학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의 직에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간이재판소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간이재판소판사, 검찰관(부검사를 제외) 또는 변호사 직에 있는 햇수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치지 않고 간이재판소판사 또는 검찰관에 임명된 사람이 제 66조의 시험에 합격한 후 간이재판소판사, 검찰관(부검사를 제외) 또는 변호사 직에 있는 햇수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판사보 임명자격)

제43조

판사보는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一 判事補
- 二 簡易裁判所判事
- 三 検察官
- 四 弁護士
- 五 裁判所調査官、司法研修所教官又は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
- 六 前条第一項第六号の大学の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

② 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三年以上同項各号に掲げる職の一又は二以上に在つた者が裁判所事務官、法務事務官又は法務教官の職に在つたときは、その在職は、これを同項各号に掲げる職の在職とみなす。

③ 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第二号乃至第五号及び前項に掲げる職に在つた年数は、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た後の年数に限り、これを当該職に在つた年数とする。

④ 三年以上前条第一項第六号の大学の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の職に在つた者が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又は弁護士の職に就い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副検事を除く。）又は弁護士の職に在つた年数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ないで簡易裁判所判事又は検察官に任命された者の第六十六条の試験に合格した後の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副検事を除く。）又は弁護士の職に在つた年数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判事補の任命資格)

第四十三条

判事補は、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た者の中からこれを任命する。

(간이재판소판사 임명자격)

제44조

① 간이재판소판사는 고등재판소장관 혹은 판사 직에 있는 사람 또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있는 햇수를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보

2. 검찰관

3. 변호사

4. 재판소조사관, 재판소사무관, 사법연수소교관, 재판소 직원종합연수소교관, 법무사무관 또는 법무교관

5. 제41조 제1항 제6호의 대학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

②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에 있는 햇수는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친 후의 햇수에 한하여 해당 직에 있는 햇수로 한다.

③ 사법수습생 수습을 마치지 아니하고 검찰관에 임명된 사람이 제66조의 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관(부검사를 제외)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햇수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재판소판사 전형임명)

제45조

① 오랜 기간 사법사무에 종사하고, 그 밖에 간이재판소판사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간이재판소판사 전형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간이재판소판사에 임명될 수 있다.

② 간이재판소판사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최고재판소가 정한다.

(簡易裁判所判事の任命資格)

第四十四条

① 簡易裁判所判事は、高等裁判所長官若しくは判事の職に在つた者又は次の各号に掲げる職の一若しくは二以上に在つてその年数を通算して三年以上になる者の中からこれを任命する。

一 判事補

二 檢察官

三 弁護士

四 裁判所調査官、裁判所事務官、司法研修所教官、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法務事務官又は法務教官

五 第四十一条第一項第六号の大学の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

② 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第二号乃至第四号に掲げる職に在つた年数は、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た後の年数に限り、これを当該職に在つた年数とする。

③ 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ないで檢察官に任命された者の第六十六条の試験に合格した後の檢察官（副検事を除く。）又は弁護士の職に在つた年数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簡易裁判所判事の選考任命)

第四十五条

① 多年司法事務にたずさわりの、その他簡易裁判所判事の職務に必要な学識経験のある者は、前条第一項に掲げる者に該当しないときでも、簡易裁判所判事選考委員会の選考を経て、簡易裁判所判事に任命されることができる。

② 簡易裁判所判事選考委員会に関する規程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임명의 결격 사유)

제46조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관리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2. 탄핵재판소의 파면 재판을 받은 사람

(보직)

제47조

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직은 최고재판소가 임명한다.

(신분 보장)

제48조

재판관은 공적 탄핵 또는 국민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및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신 장애를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전관(轉官), 전소(轉所), 직무 정지 또는 감봉을 당하지 아니한다.

(징계)

제49조

재판관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에 의해 징계된다.

(정년)

제50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70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 재판관은 65세, 간이재판소 재판관은 70세에 이르렀을 때 퇴직한다.

(任命の欠格事由)

第四十六条

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の官吏に任命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者の外、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これを裁判官に任命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
- 二 弾劾裁判所の罷免の裁判を受けた者

(補職)

第四十七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の職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補する。

(身分の保障)

第四十八条

裁判官は、公の弾劾又は国民の審査に関する法律による場合及び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裁判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思に反して、免官、転官、転所、職務の停止又は報酬の減額をされることはない。

(懲戒)

第四十九条

裁判官は、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若しくは職務を怠り、又は品位を辱める行状があつたとき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裁判によつて懲戒される。

(定年)

第五十条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年齢七十年、高等裁判所、地方裁判所又は家庭裁判所の裁判官は、年齢六十五年、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年齢七十年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보수)

제51조

재판관이 받는 보수는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52조

재판관은 재임 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나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이 되거나 적극적인 정치운동을 하는 것
2. 최고재판소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 보수를 받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
3. 상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에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최고재판소사무총장)

제53조

- ① 최고재판소에 최고재판소사무총장 1인을 둔다.
- ② 최고재판소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장관의 감독을 받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사무총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비서관)

제54조

- ① 최고재판소에 최고재판소장관 비서관 1인과 최고재판소판사 비서관 14인을 둔다.
- ② 최고재판소장관 비서관은 최고재판소장관의, 최고재판소판사 비서관은 최고재판소판사의 명령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報酬)

第五十一条

裁判官の受ける報酬について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政治運動等の禁止)

第五十二条

裁判官は、在任中、左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国会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となり、又は積極的に政治運動をすること。
- 二 最高裁判所の許可のある場合を除いて、報酬のある他の職務に従事すること。
- 三 商業を営み、その他金銭上の利益を目的とする業務を行うこと。

第二章 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

(最高裁判所事務総長)

第五十三条

- ① 最高裁判所に最高裁判所事務総長一人を置く。
- ② 最高裁判所事務総長は、最高裁判所長官の監督を受けて、最高裁判所の事務総局の事務を掌理し、事務総局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秘書官)

第五十四条

- ① 最高裁判所に最高裁判所長官秘書官一人及び最高裁判所判事秘書官十四人を置く。
- ② 最高裁判所長官秘書官は、最高裁判所長官の、最高裁判所判事秘書官は、最高裁判所判事の命を受けて、機密に関する事務を掌る。

(사법연수소교관)

제55조

- ① 최고재판소에 사법연수소 교관을 둔다.
- ② 사법연수소 교관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소에서 재판관의 연구와 수양, 사법수습생 수습의 지도를 담당한다.

(사법연수소장)

제56조

- ① 최고재판소에 사법연수소장을 두고 사법연수소교관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한다.
- ② 사법연수소장은 최고재판소장관의 감독을 받아 사법연수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사법연수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

제56조의2

- ① 최고재판소에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을 둔다.
- ②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서 재판소서기관, 가정재판소조사관, 그 밖에 재판관이 아닌 재판소 직원의 연구와 수양의 지도를 담당한다.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장)

제56조의3

- ① 최고재판소에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장을 두고, 재판소 직원종합연수소 교관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이를 임명한다.
- ②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장은 최고재판소장관의 감독을 받아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司法研修所教官)

第五十五条

- ① 最高裁判所に司法研修所教官を置く。
- ② 司法研修所教官は、上司の指揮を受けて、司法研修所における裁判官の研究及び修養並びに司法修習生の修習の指導をつかさどる。

(司法研修所長)

第五十六条

- ① 最高裁判所に司法研修所長を置き、司法研修所教官の中から、最高裁判所が、これを補する。
- ② 司法研修所長は、最高裁判所長官の監督を受けて、司法研修所の事務を掌理し、司法研修所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

재판소법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

第五十六条の二

- ① 最高裁判所に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を置く。
- ②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は、上司の指揮を受けて、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における裁判所書記官、家庭裁判所調査官その他の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の研究及び修養の指導をつかさどる。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長)

第五十六条の三

- ① 最高裁判所に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長を置き、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の中から、最高裁判所が、これを補する。
- ②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長は、最高裁判所長官の監督を受けて、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の事務を掌理し、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

(최고재판소도서관장)

제56조의4

- ① 최고재판소에 최고재판소도서관장 1인을 두고, 재판소 직원 중에서 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도서관장은 최고재판소장관의 감독을 받아 최고재판소도서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최고재판소도서관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전 2항의 규정은 국립국회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금하지 아니한다.

(고등재판소장관비서관)

제56조의5

- ① 각 고등재판소에 고등재판소장관비서관 각 1인을 둔다.
- ② 고등재판소장관비서관은 고등재판소장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판소조사관)

제57조

- ① 최고재판소, 각 고등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에 재판소 조사관을 둔다.
- ② 재판소조사관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사건(지방재판소에 있어서는 지적재산 또는 조세에 관한 사건에 한)의 심리와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재판소사무관)

제58조

- ① 각 재판소에 재판소사무관을 둔다.
- ② 재판소사무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最高裁判所図書館長)

第五十六条の四

- ① 最高裁判所に最高裁判所図書館長一人を置き、裁判所の職員の中からこれを命ずる。
- ② 最高裁判所図書館長は、最高裁判所長官の監督を受けて最高裁判所図書館の事務を掌理し、最高裁判所図書館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
- ③ 前二項の規定は、国立国会図書館法の規定の適用を妨げない。

(高等裁判所長官秘書官)

第五十六条の五

- ① 各高等裁判所に高等裁判所長官秘書官各一人を置く。
- ② 高等裁判所長官秘書官は、高等裁判所長官の命を受けて、機密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

(裁判所調査官)

第五十七条

- ① 最高裁判所、各高等裁判所及び各地方裁判所に裁判所調査官を置く。
- ② 裁判所調査官は、裁判官の命を受けて、事件（地方裁判所においては、知的財産又は租税に関する事件に限る。）の審理及び裁判に関して必要な調査その他の法律において定める事務をつかさどる。

(裁判所事務官)

第五十八条

- ① 各裁判所に裁判所事務官を置く。
- ② 裁判所事務官は、上司の命を受けて、裁判所の事務を掌る。

(사무국장)

제59조

- ① 각 고등재판소, 각 지방재판소 및 각 가정재판소에 사무국장을 두고, 재판소사무관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한다.
- ② 각 고등재판소의 사무국장은 각 고등재판소장관의, 각 지방재판소의 사무국장은 각 지방재판소장의, 각 가정재판소의 사무국장은 각 가정재판소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판소서기관)

제60조

- ① 각 재판소에 재판소서기관을 둔다.
- ② 재판소서기관은 재판소의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재판소서기관은 전항의 사무를 담당하는 외에 재판소의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명을 받아 재판관이 하는 법령과 판례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보조한다.
- ④ 재판소서기관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재판관의 명령에 따른다.
- ⑤ 재판소서기관은 구술의 조서(書取),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재판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재판소속기관(速記官))

제60조의2

- ① 각 재판소에 재판소속기관을 둔다.

(事務局長)

第五十九条

- ① 各高等裁判所、各地方裁判所及び各家庭裁判所に事務局長を置き、裁判所事務官の中から、最高裁判所が、これを補する。
- ② 各高等裁判所の事務局長は、各高等裁判所長官の、各地方裁判所の事務局長は、各地方裁判所長の、各家庭裁判所の事務局長は、各家庭裁判所長の監督を受けて、事務局の事務を掌理し、事務局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

(裁判所書記官)

第六十条

- ① 各裁判所に裁判所書記官を置く。
- ② 裁判所書記官は、裁判所の事件に関する記録その他の書類の作成及び保管その他他の法律において定める事務を掌る。
- ③ 裁判所書記官は、前項の事務を掌る外、裁判所の事件に関し、裁判官の命を受けて、裁判官の行なう法令及び判例の調査その他必要な事項の調査を補助する。
- ④ 裁判所書記官は、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は、裁判官の命令に従う。
- ⑤ 裁判所書記官は、口述の書取その他書類の作成又は変更に関して裁判官の命令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作成又は変更を正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自己の意見を書き添えることができる。

(裁判所速記官)

第六十条の二

- ① 各裁判所に裁判所速記官を置く。

- ② 재판소속기관은 재판소의 사건에 관한 속기 및 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재판소속기관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른다.

(재판소기술관(技術官))

제61조

- ① 각 재판소에 재판소기술관을 둔다.
- ② 재판소기술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기술을 담당한다.

(가정재판소조사관)

제61조의2

- ① 각 가정재판소와 각 고등재판소에 가정재판소조사관을 둔다.
- ② 가정재판소조사관은 각 가정재판소에서는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심판과 조정, 동항 제2호의 재판(인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의 부대처분에 관한 재판 및 동조 제3항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재판(이하 이 항에 있어 「부대처분 등의 재판」이라 함)에 한함)과 제31조의3 제1항 제3호의 심판에 필요한 조사와 그 밖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각 고등재판소에서는 동항 제1호의 심판에 관계된 항고심의 심리와 부대처분 등의 재판에 관계된 항소심의 심리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한다.
- ③ 최고재판소는 가정재판소조사관 중에서 수석가정재판소조사관을 명하고, 조사사무의 감독, 관계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과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조사관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른다.

- ② 裁判所速記官は、裁判所の事件に関する速記及びこれに関する事務を掌る。
- ③ 裁判所速記官は、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は、裁判官の命令に従う。

(裁判所技官)

第六十一条

- ① 各裁判所に裁判所技官を置く。
- ② 裁判所技官は、上司の命を受けて、技術を掌る。

(家庭裁判所調査官)

第六十一条の二

- ① 各家庭裁判所及び各高等裁判所に家庭裁判所調査官を置く。
- ② 家庭裁判所調査官は、各家庭裁判所においては、第三十一条の三第一項第一号の審判及び調停、同項第二号の裁判（人事訴訟法第三十二条第一項の附帯処分についての裁判及び同条第三項の親権者の指定についての裁判（以下この項において「附帯処分等の裁判」という。）に限る。）並びに第三十一条の三第一項第三号の審判に必要な調査その他他の法律において定める事務を掌り、各高等裁判所においては、同項第一号の審判に係る抗告審の審理及び附帯処分等の裁判に係る控訴審の審理に必要な調査その他他の法律において定める事務を掌る。
- ③ 最高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の中から、首席家庭裁判所調査官を命じ、調査事務の監督、関係行政機関その他の機関との連絡調整等の事務を掌らせることができる。
- ④ 家庭裁判所調査官は、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は、裁判官の命令に従う。

(가정재판소조사관보)

제61조의3

- ① 각 가정재판소에 가정재판소조사관보를 둔다.
- ② 가정재판소조사관보는 상사의 명을 받아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한다.

(집행관)

제62조

- ① 각 지방재판소에 집행관을 둔다.
- ② 집행관에 임명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가 정한다.
- ③ 집행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재판소가 발부하는 문서의 송달 그 밖의 사무를 한다.
- ④ 집행관은 수수료를 받으며 그 수수료가 일정액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정리(廷吏))

제63조

- ① 각 재판소에 정리를 둔다.
- ② 정리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사무를 다룬다.
- ③ 각 재판소는 집행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소 소재지에서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임면)

제64조

재판관이 아닌 재판소 직원의 임면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재판소, 각 고등재판소, 각 지방재판소 또는 각 가정재판소가 한다.

(家庭裁判所調査官補)

第六十一条の三

- ① 各家庭裁判所に家庭裁判所調査官補を置く。
- ② 家庭裁判所調査官補は、上司の命を受けて、家庭裁判所調査官の事務を補助する。

(執行官)

第六十二条

- ① 各地方裁判所に執行官を置く。
- ② 執行官に任命されるのに必要な資格に関する事項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 ③ 執行官は、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裁判の執行、裁判所の発する文書の送達その他の事務を行う。
- ④ 執行官は、手数料を受けるものとし、その手数料が一定の額に達しないときは、国庫から補助金を受ける。

(廷吏)

第六十三条

- ① 各裁判所に廷吏を置く。
- ② 廷吏は、法廷において裁判官の命ずる事務その他最高裁判所の定める事務を取り扱う。
- ③ 各裁判所は、執行官を用い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裁判所の所在地で書類を送達するために、廷吏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

(任免)

第六十四条

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の任免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最高裁判所、各高等裁判所、各地方裁判所又は各家庭裁判所がこれを行う。

(근무재판소 지정)

제65조

재판소조사관, 재판소사무관(사무국장인 사람을 제외), 재판소서기관, 재판소 속기관, 가정재판소조사관, 가정재판소 조사관보, 집행관 및 재판소기술공무원의 근무재판소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재판소, 각 고등재판소, 각 지방재판소 또는 각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항)

제65조의2

재판관이 아닌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3장 사법수습생

(채용)

제66조

- ① 사법수습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명한다.
- ② 전항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수습·시험)

제67조

- ① 사법수습생은 적어도 1년간 수습을 한 후, 시험에 합격한 때에 수습을 마친다.
- ② 사법수습생은 수습기간 중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에 전념하여야 한다.
- ③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수습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가 정한다.

(勤務裁判所の指定)

第六十五条

裁判所調査官、裁判所事務官（事務局長たるものを除く。）、裁判所書記官、裁判所速記官、家庭裁判所調査官、家庭裁判所調査官補、執行官及び裁判所技官の勤務する裁判所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最高裁判所、各高等裁判所、各地方裁判所又は各家庭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に関する事項)

第六十五条の二

裁判官以外の裁判所の職員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三章 司法修習生

(採用)

第六十六条

- ① 司法修習生は、司法試験に合格した者の中から、最高裁判所がこれを命ずる。
- ② 前項の試験に関する事項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修習・試験)

第六十七条

- ① 司法修習生は、少なくとも一年間修習をした後試験に合格したときは、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る。
- ② 司法修習生は、その修習期間中、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修習に専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修習及び試験に関する事項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수습급부금 지급)

제67조의2

- ① 사법수습생에게는 그 수습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기간에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습급부금을 지급한다.
- ② 사법수습급부금의 종류는 기본급부금,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으로 한다.
- ③ 기본급부금의 액수는 사법수습생이 그 수습기간 동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수습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밖에 사법수습생이 처한 환경을 감안하여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액수로 한다.
- ④ 주거급부금은 사법수습생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셋방을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함)을 빌려, 집세(사용료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함)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밖에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액수는 집세로서 통상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액수로 한다.
- ⑤ 이전급부금은 사법수습생이 그 수습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액수는 소요거리에 따라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액수로 한다.

(수습전넘자금의 대여 등)

제67조의3

- ① 최고재판소는 사법수습생의 수습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사법수습생에게 신청에 따라 무이자로 수습전넘자금(사법수습생이 그 수습에 전념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수습급부금의 지급을 받아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말함. 이하 이 조항에 있어 동일함)을 대출한다.

(修習給付金の支給)

第六十七条の二

- ① 司法修習生には、その修習のため通常必要な期間として最高裁判所が定める期間、修習給付金を支給する。
- ② 修習給付金の種類は、基本給付金、住居給付金及び移転給付金とする。
- ③ 基本給付金の額は、司法修習生がその修習期間中の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費用であつて、その修習に専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その他の司法修習生の置かれている状況を勘案して最高裁判所が定める額とする。
- ④ 住居給付金は、司法修習生が自ら居住するため住宅(貸間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借り受け、家賃(使用料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支払っている場合(配偶者が当該住宅を所有する場合その他の最高裁判所が定める場合を除く。)に支給することとし、その額は、家賃として通常必要な費用の範囲内において最高裁判所が定める額とする。
- ⑤ 移転給付金は、司法修習生がその修習に伴い住所又は居所を移転す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その移転について支給することとし、その額は、路程に応じて最高裁判所が定める額とする。
- ⑥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修習給付金の支給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修習専念資金の貸与等)

第六十七条の三

- ① 最高裁判所は、司法修習生の修習のため通常必要な期間として最高裁判所が定める期間、司法修習生に対し、その申請により、無利息で、修習専念資金(司法修習生がその修習に専念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資金であつて、修習給付金の支給を受けてもなお必要な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貸与するものとする。

- ② 수습전넘자금의 액수 및 반환 기한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최고재판소는 수습전넘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재해, 부상,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습전넘자금 반환이 곤란하게 된 때, 또는 수습전넘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에게 수습전넘자금 반환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로서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채권관리등에관한법률(1956년 법률 제114호) 제2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최고재판소는 수습전넘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수습전넘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수습전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전 각 항이 정하는 것 외에 수습자금의 대출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가 정한다.

(파면 등)

제68조

- ① 최고재판소는 사법수습생에게 성적불량, 심신 장애, 그 밖에 그 수습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로서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법수습생을 파면할 수 있다.
- ② 최고재판소는 사법수습생에게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실, 그 밖에 사법수습생에 적합하지 않은 비행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법수습생을 파면하고, 그 수습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고할 수 있다.

- ② 修習専念資金の額及び返還の期限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③ 最高裁判所は、修習専念資金の貸与を受けた者が災害、傷病その他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修習専念資金を返還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又は修習専念資金の貸与を受けた者について修習専念資金を返還することが経済的に困難である事由として最高裁判所の定める事由があるときは、その返還の期限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国の債権の管理等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一年法律第百十四号）第二十六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④ 最高裁判所は、修習専念資金の貸与を受けた者が死亡又は精神若しくは身体の障害により修習専念資金を返還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修習専念資金の全部又は一部の返還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⑤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修習専念資金の貸与及び返還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罷免等)

第六十八条

- ① 最高裁判所は、司法修習生に成績不良、心身の故障その他のその修習を継続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事由として最高裁判所の定め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司法修習生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最高裁判所は、司法修習生に品位を辱める行状その他の司法修習生たるに適しない非行に当たる事由として最高裁判所の定め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司法修習生を罷免し、その修習の停止を命じ、又は戒告することができる。



제5편 재판사무 취급

제1장 법정

(개정 장소)

제69조

- ① 법정은 재판소 또는 지부에서 연다.
- ② 최고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장소에서 법정을 열거나 또는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하급재판소에 법정을 열도록 할 수 있다.

(공개정지 절차)

제70조

재판소는 일본국헌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심(對審)을 공개하지 아니하려면 공중을 퇴정시키기 전에 그러한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야 한다.

(법정의 질서유지)

제71조

-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 또는 개정을 한 1인의 재판관이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개정을 한 1인의 재판관은 법정에서 재판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고, 그 밖에 법정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다.



第五編 裁判事務の取扱

第一章 法廷

(開廷の場所)

第六十九条

- ① 法廷は、裁判所又は支部でこれを開く。
- ② 最高裁判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他の場所で法廷を開き、又はその指定する他の場所で下級裁判所に法廷を開かせることができる。

(公開停止の手續)

第七十条

裁判所は、日本国憲法第八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対審を公開しないで行うには、公衆を退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判決を言い渡すときは、再び公衆を入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法廷の秩序維持)

第七十一条

- ① 法廷における秩序の維持は、裁判長又は開廷をした一人の裁判官がこれを行う。
- ② 裁判長又は開廷をした一人の裁判官は、法廷における裁判所の職務の執行を妨げ、又は不当な行状をする者に対し、退廷を命じ、その他法廷における秩序を維持するのに必要な事項を命じ、又は処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경찰관 파견 요구)

제71조의2

- ① 재판장 또는 개정을 한 1인의 재판관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道府県) 경찰본부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정 전에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질서의 유지에 있어 재판장 또는 1인의 재판관의 지휘를 받는다.

(법정 외에 있어서 처분)

제72조

- ① 재판소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1인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 2항에 규정하는 재판장의 권한은 재판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할 경우에도 가진다.

(심판방해죄)

제73조

제71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警察官の派出要求)

第七十一条の二

- ① 裁判長又は開廷をした一人の裁判官は、法廷における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警視總監又は道府県警察本部長に警察官の派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法廷における秩序を維持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開廷前においてもその要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前項の要求により派出された警察官は、法廷における秩序の維持につき、裁判長又は一人の裁判官の指揮を受ける。

(法廷外における処分)

第七十二条

- ① 裁判所が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廷外の場所で職務を行う場合において、裁判長又は一人の裁判官は、裁判所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者に対し、退去を命じ、その他必要な事項を命じ、又は処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 ② 前条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 ③ 前二項に規定する裁判長の権限は、裁判官が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廷外の場所で職務を行う場合において、その裁判官もこれを有する。

(審判妨害罪)

第七十三条

第七十一条又は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裁判所又は裁判官の職務の執行を妨げた者は、これを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千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2장 재판소 용어

(재판소 용어)

제74조

재판소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제3장 재판소 평의

(평의의 비밀)

제75조

- ① 합의체에서 하는 재판의 평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법수습생의 방청은 허용할 수 있다.
- ② 평의는 재판장이 열고, 정리한다. 평의의 경과와 각 재판관의 의견 및 각 의견에 대한 찬반의 수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의견을 개진할 의무)

제76조

재판관은 평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평결)

제77조

- ① 재판은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관하여 최고재판소가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견에 따른다.
- ②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의견에 따른다.

第二章 裁判所の用語

(裁判所の用語)

第七十四条

裁判所では、日本語を用いる。

第三章 裁判の評議

(評議の秘密)

第七十五条

- ① 合議体とする裁判の評議は、これを公行しない。但し、司法修習生の傍聴を許すことができる。
- ② 評議は、裁判長が、これを開き、且つこれを整理する。その評議の経過並びに各裁判官の意見及びその多数の数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がない限り、秘密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を述べる義務)

第七十六条

裁判官は、評議において、その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

(評決)

第七十七条

- ① 裁判は、最高裁判所の裁判について最高裁判所が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過半数の意見による。
- ② 過半数の意見によつて裁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左の事項について意見が三説以上に分れ、その説が各々過半数にならないときは、裁判は、左の意見による。

1. 액수에 관해서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보충재판관)

제78조

합의체의 심리가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충재판관이 심리에 입회하고, 심리 중 합의체의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합의체에 참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재판관 인원은 합의체 재판관 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4장 법원의 공조

(재판소의 공조)

제79조

재판소는 재판사무에 관하여 서로 필요한 보조를 한다.



제6편 사법행정

(사법행정의 감독)

제80조

사법행정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 一 数額については、過半数になるまで最も多額の意見の数を順次少額の意見の数に加え、その中で最も少額の意見
- 二 刑事については、過半数になるまで被告人に最も不利な意見の数を順次利益な意見の数に加え、その中で最も利益な意見

(補充裁判官)

第七十八条

合議体の審理が長時日にわたることの予見される場合においては、補充の裁判官が審理に立ち会い、その審理中に合議体の裁判官が審理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つた場合において、あらかじめ定める順序に従い、これに代つて、その合議体に加わり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補充の裁判官の員数は、合議体の裁判官の員数を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

재판소법

第四章 裁判所の共助

(裁判所の共助)

第七十九条

裁判所は、裁判事務について、互に必要な補助をする。



第六編 司法行政

(司法行政の監督)

第八十条

司法行政の監督権は、左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行う。

1.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직원과 하급재판소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2. 각 고등재판소는 그 고등재판소 직원과 관할구역의 하급재판소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3. 각 지방재판소는 그 지방재판소 직원과 관할구역의 간이재판소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4. 각 가정재판소는 그 가정재판소 직원을 감독한다.
5.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간이재판소 재판관은 그 간이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직원을 감독한다.

(감독권과 재판권의 관계)

제81조

전조의 감독권은 재판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사무 취급 방법에 대한 불복)

제82조

재판소의 사무 취급 방법에 대하여 제기된 불복은 제80조의 감독권에 따라 처분한다.



제7편 재판소 경비

(재판소 경비)

제83조

- ① 재판소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一 最高裁判所は、最高裁判所の職員並びに下級裁判所及びその職員を監督する。
- 二 各高等裁判所は、その高等裁判所の職員並びに管轄区域内の下級裁判所及びその職員を監督する。
- 三 各地方裁判所は、その地方裁判所の職員並びに管轄区域内の簡易裁判所及びその職員を監督する。
- 四 各家庭裁判所は、その家庭裁判所の職員を監督する。
- 五 第三十七条に規定する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その簡易裁判所の裁判官以外の職員を監督する。

(監督権と裁判権との関係)

第八十一条

前条の監督権は、裁判官の裁判権に影響を及ぼし、又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はない。

(事務の取扱方法に対する不服)

第八十二条

裁判所の事務の取扱方法に対して申し立てられた不服は、第八十条の監督権によりこれを処分する。



第七編 裁判所の経費

(裁判所の経費)

第八十三条

- ① 裁判所の経費は、独立して、国の予算にこれを計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前項の経費中には、予備金を設けることを要する。

부칙

1.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재판소구성법, 재판소구성법시행조례, 판사징계법 및 행정재판법은 폐지한다.
3. 최고재판소는 당분간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 또는 검찰관을 사법연수소교관 또는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으로, 재판관을 재판소조사관으로 각각 충당할 수 있다.

부칙(1947년 10월 29일 법률 제126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47년 12월 17일 법률 제195호)

제17조

이 법률은 공포 후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이 법률 시행 전의 사법차관, 사법사무관 및 사법교관의 재직은 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와 검찰청법 제19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 법무청의 각 장관, 법무청사무관 및 법무청교관의 재직으로 본다.

부칙(1948년 1월 1일 법률 제1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施行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2. 裁判所構成法、裁判所構成法施行条例、判事懲戒法及び行政裁判法は、これを廃止する。
3. 最高裁判所は、当分の間、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官又は検察官をもつて司法研修所教官又は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に、裁判官をもつて裁判所調査官にそれぞれ充てることができる。

附則(昭和二二年一〇月二九日法律第一二六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二年一二月一七日法律第一九五号)

第十七条

この法律は、公布の後六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第十八条

この法律施行前における司法次官、司法事務官及び司法教官の在職は、裁判所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及び第四十四条並びに検察庁法第十九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夫々法務庁の各長官、法務庁事務官及び法務庁教官の在職とみなす。

附則(昭和二三年一月一日法律第一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부칙(1948년 7월 12일 법률 제146호) 抄

제4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제10조

이 법률은 194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판소법 제14조의2, 제56조의2, 판사보직권의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의2 및 재판소직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과 재판소법 제10조, 제63조 제1항 및 재판소직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조를 개정하는 규정은 이 법률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 ① 제1조 중 재판소법 제16조, 제24조 및 제33조를 개정하는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공소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개정 전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이 법률 시행 전의 소년심판관 재직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재판소조사관의 재직으로 본다.

제13조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 제63조 제2항의 가정재판소는 동법 시행시 사건이 계속 중인 소년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로 한다.

附則(昭和二十三年七月一二日法律第一四六号) 抄

第四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十三年一二月二日法律第二六〇号)

第十条

この法律は、昭和二十四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但し、裁判所法第十四条の二、第五十六条の二、判事補の職権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の二及び裁判所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第六条の規定並びに裁判所法第十条、第六十三条第一項及び裁判所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第四条を改正する規定は、この法律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第十一条

- ① 第一条中裁判所法第十六条、第二十四条及び第三十三条を改正する規定は、この法律施行前に公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② 前項の事件については、改正前の規定は、この法律施行後も、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

第十二条

この法律施行前における少年審判官の在職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及び第四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裁判所調査官の在職とみなす。

第十三条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第六十三条第二項の家庭裁判所は、同法施行の際事件が係属する少年審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とする。

제14조

① 이 법률 시행 시 가사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가사심판법(이하 구가사심판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률시행일에 그 가사심판소나 지방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

② 가사심판소의 심판에 관한 항고 사건 및 구가사심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항고 사건으로 이 법률 시행 시 항고재판소에 계속 중인 것은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항고 사건으로 본다.

③ 전 2항의 사건에 있어서 이 법률 시행 전에 구가사심판법에 따라 한 가사심판소와 그 밖의 사람의 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후의 가사심판법(이하 신가사심판법이라 함)의 적용에 있어 동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 본다.

제15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가사심판소의 심판 또는 같은 날 이전에 가사심판소에서 성립한 조정은 그 가사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심판 또는 동 재판소에서 성립한 조정으로 본다.

제16조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구가사심판법은 이 법률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과태료 심판은 구가사심판법에 따라서 권한을 갖는 가사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가 한다.

第十四条

- ① この法律施行の際現に家事審判所に係属している事件及び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家事審判法（以下旧家事審判法という。）第四条の規定によつて地方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事件は、この法律施行の日に、その家事審判所又は地方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に係属したものとみなす。
- ② 家事審判所の審判に関する抗告事件及び旧家事審判法第四条の規定による抗告事件でこの法律施行の際現に抗告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ものは、家庭裁判所の審判に関する抗告事件とみなす。
- ③ 前二項の事件において、この法律施行前に旧家事審判法によつてした家事審判所その他の者の行為は、別段の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改正後の家事審判法（以下新家事審判法という。）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によつてした行為とみなす。

第十五条

この法律施行前に確定した家事審判所の審判又は同日以前に家事審判所において成立した調停は、その家事審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審判又は同裁判所において成立した調停とみなす。

第十六条

- ① この法律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過料に関する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旧家事審判法は、この法律施行後も、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過料の審判は、旧家事審判法によれば権限を有すべき家事審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が行う。

② 이 법률 시행 전에 참여원(參與員) 또는 조정위원(調停委員)의 직에 있던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구가사심판법이 이 법률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가사심판법시행법(1947년 법률 제153호)에 따라 가사심판소의 심판으로 간주된 재판은 이 법률 시행 후에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간주된다.

제18조

① 가사심판법시행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관할 가사심판소에 환송하여야 할 사건은 이 법률 시행 후에는 관할 가정재판소로 환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된 경우, 그 사건에서 가사심판법시행법에 의한 개정 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한 재판소와 그 밖의 자의 행위는 신가사심판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민법일부를개정하는법률(1947년 법률 제220호) 부칙 제14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3항(동법 부칙 제25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항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따라 가사심판소가 하여야 하는 심판은 이 법률 시행 후에는 가정재판소가 한다.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36호) 抄

1. 이 법률 중 법무부설치법 제13조의7 규정은 범죄자예방갱생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194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 この法律施行前に参与員又は調停委員の職にあつた者の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旧家事審判法は、この法律施行後も、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

第十七条

家事審判法施行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五十三号）によつて家事審判所の審判とみなされる裁判は、この法律施行後は、家庭裁判所の審判とみなす。

第十八条

① 家事審判法施行法第二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管轄家事審判所に差し戻すべき事件は、この法律施行後は、管轄家庭裁判所に差し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前項の規定によつて差し戻した場合には、その事件において家事審判法施行法による改正前の非訟事件手続法によつてした裁判所その他の者の行為は、新家事審判法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によつてした行為とみなす。

第十九条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二号）附則第十四条第二項又は第二十七条第三項（同法附則第二十五条第二項但書、第二十六条第二項及び第二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つて家事審判所が行うべき審判は、この法律施行後は、家庭裁判所が行う。

附則(昭和二十四年五月三十一日法律第一三六号) 抄

1. この法律のうち、法務府設置法第十三条の七の規定は犯罪者予防更生法が施行される日から、その他の規定は昭和二十四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4. 이 법률 시행 전의 법무청 각 장관, 법무청사무관 및 법무청교관의 재직은 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판사보직권의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44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각각 법무부의 각 장관, 법무부사무관 및 법무부교관의 재직으로 본다.

부칙(1949년 6월 1일 법률 제177호)

1. 이 법률 중 재판소법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때, 실제로 재판소서기에 임명되어 있는 재판소사무관으로서 재판소서기관에 임명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사령(辭令)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사무관을 겸하여 재판소서기관보에 임명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재판소에 근무할 것을 명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령 중 「재판소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판소서기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50년 4월 14일 법률 제96호)

1. 이 법률 중 재판소법 제61조의2, 제 61조의3 및 제65조의 개정규정, 검찰심사회법 제6조 제6호의 개정규정 중 소년조사관 및 소년조사관보에 관한 것과 소년법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4. この法律施行前における法務庁の各長官、法務庁事務官及び法務庁教官の在職は、裁判所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判事補の職権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四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それぞれ法務府の各長官、法務府事務官及び法務府教官の在職とみなす。

附則(昭和二四年六月一日法律第一七七号)

1. この法律のうち、裁判所法第六十条、第六十条の二、及び第六十五条の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その他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法律の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際に裁判所書記に補せられている裁判所事務官で、裁判所書記官に任命されないものは、別に辞令を発せられないときは、兼ねて裁判所書記官補に任命され、且つ、現にその者の勤務する裁判所に勤務することを命ぜられたものとみなす。
3. 他の法令中「裁判所書記」とあるのは、「裁判所書記官」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附則(昭和二五年四月一四日法律第九六号)

1. この法律のうち、裁判所法第六十一条の二、第六十一条の三及び第六十五条の改正規定、検察審査会法第六条第六号の改正規定中少年調査官及び少年調査官補に関するもの並びに少年法の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その他の部分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2. 이 법률의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때 실제로 소년보호사(司)에 임명되어 있는 재판소사무관으로서 소년조사관에 임명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사령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사무관을 겸하여 소년조사관보에 임명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재판소에 근무할 것을 명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50년 12월 20일 법률 제287호)

1. 이 법률 중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방재판소에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51년 3월 30일 법률 제59호)

1. 이 법률 중 재판소법 제65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52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19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판소법 제3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정재판소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51년 12월 6일 법률 제298호) 抄

1. 이 법률은 195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この法律の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際に現に少年保護司に補せられている裁判所事務官で、少年調査官に任命されないものは、別に辞令を發せられないときは、裁判所事務官を兼ねて少年調査官補に任命され、且つ、現にその者の勤務する裁判所に勤務することを命ぜられたものとみなす。

附則(昭和二五年一二月二〇日法律第二八七号)

1. この法律のうち、第三十三条の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その他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2. 第三十三条の改正規定の施行前に地方裁判所に訴又は公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同条の改正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昭和二六年三月三〇日法律第五九号)

1. この法律のうち、裁判所法第六十五条の二及び国家公務員法第二条の改正規定は昭和二十七年一月一日から、その他の規定は昭和二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2. 裁判所法第三十一条の三第二項の改正規定施行前に家庭裁判所に公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同項の改正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昭和二六年一二月六日法律第二九八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二十七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8호) 抄

1. 이 법률은 195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종전의 기관과 직원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과 직원이 되며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법률 시행 전의 법무부 각 장관, 법무총재관방장, 법무부사무관 및 법무부교관의 재직은 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판사보의직권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44조, 검찰청법 제19조, 변호사법 제5조와 사법서사법 제3조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각각 법무성의 사무차관, 법무사무관 및 법무교관의 재직으로 본다.

부칙(1954년 5월 27일 법률 제126호) 抄

1. 이 법률은 195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재판소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제33조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당분간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지정하는 간이재판소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설립된 간이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지정하는 사람이 취급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재판소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 전에 관할간이재판소에서 수리한 사건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간이재판소에서 완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해제된 때에도 이에 준한다.

附則(昭和二十七年七月三十一日法律第二六八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二十七年八月一日から施行する。
3. 従前の機関及び職員は、この法律に基く相当の機関及び職員となり、同一性をもつて存続するものとする。
4.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ける法務府の各長官、法務総裁官房長、法務府事務官及び法務府教官の在職は、裁判所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判事補の職権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四十四条、検察庁法第十九条、弁護士法第五条並びに司法書士法第三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それぞれ法務省の事務次官、法務事務官及び法務教官の在職とみなす。

附則(昭和二十九年五月二七日法律第一二六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二十九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地方裁判所に訴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第三十三条の改正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当分の間、最高裁判所の規則で指定する簡易裁判所の民事訴訟に関する事務は、そ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その支部の所在地に設立された簡易裁判所で最高裁判所の規則で指定するものが取り扱う。
4. 前項の規定により簡易裁判所が指定されたときは、その指定前に管轄簡易裁判所で受理した事件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その簡易裁判所で完結する。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が解除されたときも、これに準ずる。

5. 각 가정재판소는 당분간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재판소조사관보에게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6. 이 법률 시행 시 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보, 소년조사관 또는 소년조사관보의 직에 있는 사람은 별도로 사령을 내리지 않은 때에는 각각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가정재판소조사관으로, 가사조사관보 및 소년조사관보는 가정재판소조사관보에 임명되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재판소에 근무할 것을 명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 중 제53조 규정은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 시행일부터, 그 밖의 부분은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 동법 부칙 제1항 단서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함)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57년 5월 1일 법률 제91호) 抄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0년 6월 25일 법률 제104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抄

이 법률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各家庭裁判所は、当分の間、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庭裁判所調査官補に家庭裁判所調査官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6.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家事調査官、家事調査官補、少年調査官又は少年調査官補の職にある者は、別に辞令を発せられないときは、それぞれ、家事調査官及び少年調査官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家事調査官補及び少年調査官補は家庭裁判所調査官補に任命され、且つ、現にその者の勤務する裁判所に勤務することを命ぜられたものとみなす。

附則(昭和二九年六月八日法律第一六三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中、第五十三条の規定は交通事件即決裁判手続法の施行の日から、その他の部分は、警察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二号。同法附則第一項但書に係る部分を除く。）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二年五月一日法律第九一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五年六月二五日法律第一〇四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七年五月一六日法律第一四〇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三十七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부칙(1964년 6월 24일 법률 제114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년 3월 31일 법률 제27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판소법 부칙 개정규정은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6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이 법률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6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년 5월 18일 법률 제67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昭和三九年六月二四日法律第一一四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〇年三月三一日法律第二七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昭和四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裁判所法附則の改正規定は、同年九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一年三月三一日法律第二三号)

この法律は、昭和四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一年七月一日法律第一一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こ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五年五月一八日法律第六七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昭和四十五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경과조치)

2.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78년 6월 23일 법률 제82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년 8월 24일 법률 제82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95년 4월 19일 법률 제66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년 5월 6일 법률 제50호)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第三十三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昭和五三年六月二三日法律第八二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昭和五十四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五七年八月二四日法律第八二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昭和五十七年九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があつた事件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七年四月一九日法律第六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〇年五月六日法律第五〇号)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平成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경과조치)

2. 이 법률 시행 전에 채용되어 이 법률 시행 후 계속하여 수습을 하는 사법수습생의 수습기간 및 국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2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등)

제3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때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 규정 시행의 상황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그와 함께 그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규정은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조 및 부칙 제11조 규정 2006년 4월 1일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採用され、この法律の施行後も引き続き修習をする司法修習生の修習期間及び国庫から給与を受ける期間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一二年一二月六日法律第一四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検討等)

第三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国会に報告するとともに、そ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検討の結果に基づいて法制の整備その他の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附則(平成一四年一二月六日法律第一三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六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略

二 第三条及び附則第十一条の規定 平成十八年四月一日

(사법수습생 수습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 ① 제3조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되어 그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수습을 하는 사법수습생의 수습기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신법 부칙 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제3조 규정 시행 후에 채용된 사법수습생에 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의 수습에 있어서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로서의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습기간의 연장과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09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재판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되는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전조 규정 시행 시 계속 중인 혼인의 취소 및 이혼의 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司法修習生の修習期間等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一条

- ① 第三条の規定の施行前に採用され、その施行後も引き続き修習をする司法修習生の修習期間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② 新法附則第二項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新司法試験に合格した者とみなされた者であって、第三条の規定の施行後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について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第六十七条第一項の修習において裁判官、検察官又は弁護士としての実務に必要な能力を十全に修得させるため、必要な修習期間の伸長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ことができる。

附則(平成一五年七月一六日法律第一〇九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裁判所法の一部改正に伴う家庭裁判所調査官の事務等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五条

前条の規定の施行の際現に係属している婚姻の取消し及び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第六十一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부칙(2003년 7월 25일 법률 제128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재판소 관할 확대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제2조

① 이 법률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함) 전에 지방재판소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제1조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관계 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시행일 전에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법인이 한 사법서사법(1950년 법률 제197호)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송대리관계업무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4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판소법 등에 관계된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의 재판소서기관연수소교관의 재직은 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판사보직권의특례등에관한법률(1948년 법률 제146호) 제1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44조, 검찰청법(1947년 법률 제61호) 제19조와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제5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교관의 재직으로 본다.

附則(平成一五年七月二五日法律第一二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簡易裁判所の管轄の拡大に伴う経過措置)

第二条

① 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第三十三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施行日前に司法書士又は司法書士法人がした司法書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九十七号）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簡裁訴訟代理関係業務の範囲を超える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一六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裁判所法等に係る資格要件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ける裁判所書記官研修所教官の在職は、裁判所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判事補の職権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四百十六号）第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四十四条、検察庁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一号）第十九条並びに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五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教官の在職とみなす。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0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의 원칙)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비용등에관한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의 규정(벌칙을 제외함)은 이 부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에 이들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부칙(2004년 12월 10일 법률 제163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 시행 전에 채용되어 이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 하여 수습하는 사법수습생의 급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平成一六年六月一八日法律第一二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の原則)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民事訴訟法、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特許法、実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不正競争防止法及び著作権法の規定（罰則を除く。）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も適用する。ただし、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これらの法律の規定により生じた効力を妨げない。

재
판
소
법

附則(平成一六年一二月一〇日法律第一六三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平成二十二年十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採用され、この法律の施行後も引き続き修習をする司法修習生の給与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一七年七月一五日法律第八三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조교수의 재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 시행 전의 조교수로서의 재직은 준교수로서의 재직으로 간주한다.

1. 생략
2. 재판소법(1947년 법률 제59호) 제41조, 제42조(판사보직권특례등에관한법률(1948년 법률 제146호) 제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44조

부칙(2006년 5월 8일 법률 제36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이하 「시행일」이라 함)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1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일부터 시행한다.

(助教授の在職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次に掲げる法律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ける助教授としての在職は、准教授としての在職とみなす。

一 略

二 裁判所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九号）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判事補の職権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四十六号）第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四十四条

附則(平成一八年五月八日法律第三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九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一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以下「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二〇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一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부칙(2010년 12월 3일 법률 제64호)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이하 「신재판소법」이라 함) 부칙 제4항의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이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채용된 사법수습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신재판소법 부칙 제4항에 규정하는 날까지 채용되어 그 날 후에도 계속하여 수습을 하는 사법수습생의 급여에 관해서는 그 날 후에도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신재판소법 부칙 제4항 후단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해서는 재판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163호) 부칙 제3항에 의한 개정 전의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75호) 제14조 단서에 규정하는 급여의 예에 따른다.
5. 이 법률 시행시 재판소법 제6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수습자금의 대출 신청을 한 사법수습생에 관해서는 이 법률 시행일에 동항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6. 부칙 제2항부터 전항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이 법률은 신비송사건절차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附則(平成二二年一二月三日法律第六四号)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以下「新裁判所法」という。）附則第四項の規定は、平成二十二年十一月一日からこの法律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についても、適用する。
3. 新裁判所法附則第四項に規定する日までに採用され、同日後も引き続き修習をする司法修習生の給与については、同日後においても、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新裁判所法附則第四項後段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裁判所法第六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与については、裁判所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六十三号）附則第三項による改正前の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十四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給与の例による。
5.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裁判所法第六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修習資金の貸与の申請をしている司法修習生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同項の申請を撤回したものとみなす。
6. 附則第二項から前項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附則(平成二三年五月二五日法律第五三号)

- この法律は、新非訟事件手続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부칙(2012년 8월 3일 법률 제54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재판소법 제67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년 6월 19일 법률 제48호) 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조약이 일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4월 26일 법률 제23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재판소법(이하 「신법」이라 함) 제67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채용되어 이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수습을 하는 사법수습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신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채용된 사법수습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 시행 전에 채용된 사법수습생의 수습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신법 제68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채용된 사법수습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 시행 전에 채용된 사법수습생의 파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則(平成二四年八月三日法律第五四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中裁判所法第六十七条の二第三項の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二五年六月一九日法律第四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条約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二九年四月二六日法律第二三号)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平成二十九年十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裁判所法（以下「新法」という。）第六十七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採用され、この法律の施行後も引き続き修習をする司法修習生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新法第六十七条の三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の修習資金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新法第六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採用された司法修習生の罷免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5. 전 3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년 6월 21일 법률 제67호) 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附則(平成二九年六月二一日法律第六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03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사무처리규칙

- 1947년 11월 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6호
- 최종개정: 1965년 3월 3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5호

최고재판소재판사무처리규칙

부칙

- 부칙(1947년 12월 2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9호)
 - 부칙(1948년 4월 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3호)
 - 부칙(1948년 10월 1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26호)
 - 부칙(1949년 7월 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2호)
 - 부칙(1953년 1월 1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호)
 - 부칙(1965년 3월 3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5호)
-

최고재판소재판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최고재판소재판사무처리규칙

제1조

최고재판소 소법정은 제1소법정, 제2소법정 및 제3소법정으로 한다.

제2조

- ① 소법정 재판관의 인원은 5인으로 한다.

03

最高裁判所裁判事務処理規則

- 昭和二二年十一月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六号
- 最終改正：同四〇年三月三十一日同第五号

最高裁判所裁判事務処理規則

附則

附則(昭和二二年一二月二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九号)

附則(昭和二三年四月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三号)

附則(昭和二三年一〇日一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二六号)

附則(昭和二四年七月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二号)

附則(昭和二八年一月一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号)

附則(昭和四〇年三月三十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五号)

最高裁判所裁判事務処理規則を次のように定める。



最高裁判所裁判事務処理規則

第一条

最高裁判所の小法廷は、第一小法廷、第二小法廷及び第三小法廷とする。

第二条

① 小法廷の裁判官の員数は、五人とする。

② 소법정은 재판관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조

소법정 재판장은 각 소법정에서 정한다. 다만, 최고재판소 장관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장관을 재판장으로 한다.

제4조

각 소법정의 재판관 배치, 재판관에게 지장이 있을 때 대리 순서와 각 소법정 사무 배분에 관해서는 매년 12월 재판관 회의의 협의로 다음 해 내용을 정한다.

제5조

전조의 규정으로 재판관 배치, 재판관 대리 순서와 사무 배분이 일단 정해지면 어느 소법정의 사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그 재판관이 퇴관하거나 혹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결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6조

소법정에서는 각 사건에 주임재판관을 정한다.

제7조

대법정은 9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

① 대법정은 최고재판소장관을 재판장으로 한다.

② 小法廷では、裁判官三人以上が出席すれば、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条

小法廷の裁判長は、各小法廷でこれを定める。但し、最高裁判所長官が出席する場合には、最高裁判所長官を裁判長とする。

第四条

各小法廷の裁判官の配置、裁判官に差支あるときの代理順序及び各小法廷に對する事務の分配については、毎年十二月裁判官會議の議により翌年分を定める。

第五条

前條の規定により裁判官の配置、裁判官の代理順序及び事務の分配が一たび定まつたときは、一小法廷の事務が多過ぎるか、又はその裁判官が退官し、若しくは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り久しく欠勤する等引續き差支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一年間これを変更しない。

第六条

小法廷では、各事件につき、主任裁判官を定める。

第七条

大法廷では、九人以上の裁判官が出席すれば、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条

① 大法廷では、最高裁判所長官を裁判長とする。

② 최고재판소장관에게 지장이 있을 때의 대리순서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 ① 사건은 먼저 소법정에서 심리한다.
- ② 다음의 경우 소법정 재판장은 대법정 재판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소법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소법정 재판관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각 의견이 동수인 경우
 3. 대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대법정에서 다시 심리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정에서는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점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재판하여도 무방하다.
- ④ 전항 후단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소법정에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한다.
- ⑤ 재판소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법정 재판과 의견이 같을 때에는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관계없이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
- ⑥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해서, 의견이 대심원(大審院)에서 내린 판결에 반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0조

대법정에서 다루는 사건과 관련하여 구류 기간 갱신, 구류 취소, 보석, 보석 취소, 책부(責付)¹⁾, 책부 취소, 구류 집행 정지, 구류 집행정지의 취소 또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형사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맡기고 구류 집행을 정지하는 구 형사소송법상의 제도.

② 最高裁判所長官に差支あるときの代理順序については、第四條の規定を準用する。

第九條

- ① 事件は、まず小法廷で審理する。
- ② 左の場合には、小法廷の裁判長は、大法廷の裁判長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裁判所法第十條第一号乃至第三号に該当する場合
 - 二 その小法廷の裁判官の意見が二説に分れ、その説が各々同数の場合
 - 三 大法廷で裁判することを相当と認めた場合
- ③ 前項の通知があつたときは、大法廷で更に審理し、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大法廷では、前項各号にあたる点のみについて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 ④ 前項後段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小法廷でその他について審理及び裁判をする。
- ⑤ 裁判所法第十條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意見が前にその法律、命令、規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するとした大法廷の裁判と同じであるときは、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小法廷で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⑥ 法令の解釋適用について、意見が大審院のした判決に反するときも、また前項と同様とする。

第十條

大法廷で取り扱う事件に關し、勾留の期間の更新、勾留の取消、保釋、保釋の取消、責付、責付の取消、勾留の執行停止、勾留の執行停止の取消又は強制執行の停止をするには、小法廷で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1조

제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법정 주임재판관이 대법정 주임 재판관이 된다. 다만, 대법정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다른 재판관을 주임재판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다는 재판을 하는 데에는 8인 이상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판서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는 데에는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재판서 정보를 내각에 송부한다. 그 재판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일 때에는 재판서 정보를 국회에 송부한다.

제15조

- ① 각 법정에 재판소서기관을 둔다.
- ② 재판소서기관의 배치는 재판관 회의의 협의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第十一条

第九條第三項の場合においては、小法廷における主任裁判官が、大法廷における主任裁判官となる。但し、大法廷の裁判官過半数の意見により、他の裁判官を主任裁判官と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二条

法律、命令、規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しないとの裁判をするには、八人以上の裁判官の意見が一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三条

裁判書に各裁判官の意見を表示するには、理由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四条

第十二條の裁判をしたときは、その要旨を官報に公告し、且つその裁判書の正本を内閣に送付する。その裁判が、法律が憲法に適合しないと判断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裁判書の正本を國會にも送付する。

第十五条

- ① 各法廷に裁判所書記官を置く。
- ② 裁判所書記官の配置は、裁判官會議の議によりこれを定める。

附則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부칙(1947년 12월 2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48년 4월 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48년 10월 1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49년 7월 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53년 1월 19일 최고재판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년 3월 31일 최고재판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昭和二二年一二月二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九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三年四月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三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三年一〇日一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二六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四年七月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二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八年一月一九日最高裁判所規則第一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〇年三月三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五号)

この規則は、昭和四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2018 국가별 법령집 · 일본편

2018년 3월 13일 인쇄

2018년 3월 20일 발행

발행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쇄 : 성문인쇄사
02.2272.7553

<비매품>

